

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  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배 의원입니다.
- 이렇게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은 해당 건축물·시설 내 이용자에 한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아시다시피 서울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시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

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
- 이에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 지역주민의 주차장 편의성을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